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

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
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

김 양 희

2025년 6월 18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
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전단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민간위원은 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56조부터 제58조에 따른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준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하고 영상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주민보고회 개최)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이전 또는 이후에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략)	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현 행과 같음)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<u>위촉한</u> <u>다</u> .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 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위촉하되,</u> <u>민간위원은 외부의 추천을 받은</u> <u>사람으로 위촉한다.</u> 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	제7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<u>심사위원회 회의는 「서울특</u> <u>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」</u> <u>제56조부터 제58조에 따른 본회</u> <u>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에</u> <u>준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하고</u> <u>영상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.</u>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2조(주민보고회 개최) <u>공무국</u> <u>외출장 대상 의원은 공무국외출</u> <u>장 이전 또는 이후에 주민보고</u> <u>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
<u>제12조 · 제13조</u> (생 략)	<u>제13조 · 제14조</u> (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